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2023.2.14. 공포, 20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 절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제90조 및 제91조)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 이행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13조 제3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을 공정거래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기준 조정(안 제14조 개정)

- 1) 법 제9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 매출액이 없는 등의 기준으로 ①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를 삭제하고, ②매출액 산정자료가 재해 등으로

훼손·소멸되어 객관적인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위반기간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나.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 1) 개정 법률(제7조2의제5항)이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위탁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제90조제7항)을 준용(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위탁)함에 따라 시행령상 위탁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 동의를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 정비([별표2] 개정)

- 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內 위반행위 조항을 現 공정거래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공정거래법 제66조, 제8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제3호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동의를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를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별기준 마.의 “제43조의2”를 “제66조”로, 바.의 “제50조제1항제1호”를 “제81조제1항제1호”로, 사.의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아.의 “제50조제2항”을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영업</u> 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u>영업 중단</u> 등으로 인하여 <u>영업실적</u> 이 없는 경우 2. <u>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u> 3. <u>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u> 3. <u>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u>
<신 설>	제16조의5(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 <u>소비자기본법</u> 」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1. 일반기준									
가.~나.(생략)				가.~나.(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라.(생략)					가.~라.(현행과 같음)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생략)	(생략)	(생략)	마.----- ----- -----제66조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바. ----- ----- ----- ----- ---제81조 제1항제1호-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 -----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사.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사. ----- ----- ----- ----- ----제81조 제1항제3호 -----제6항----- ----- ----- ----- ----- -----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아. ----- ----- ----- -----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생략)	(생략)		-----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48